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모 등 보호자 지원 근거 마련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64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모 등 보호자 지원 근거 마련	2
2. 개정안 부칙	16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성국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10. 2.
3. 회 부 일 : 2025. 10.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학부모’의 권리·책임·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임.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지역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회 등 학부모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Ⅲ. 검토의견

1. 부모 등 보호자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보호자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교육, 상담, 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u>보호자</u> 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u>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 ②·③ (생략) <u><신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신 설>	의 교육 및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교육, 상담, 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학부모지원센터(이하 “학부모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부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 2.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 협력 역량 강화 지원 3. 보호자에 대한 상담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나. 검토의견

- ☐ 현행 「대한민국헌법」 등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하여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의무, 권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제2장 교육당사자에 제13조(보호자)를 규정하면서, 그 내용으로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 등을 규정함.

「초·중등교육법」은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중 제1절 학생에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를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지원하고,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의무를 규정함.

[부모 등 보호자 관련 조항]

법률명	조항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 2026.3.1.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 시행으로,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이동(*「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 2025. 4. 1. 개정, 2026. 3. 1. 시행)

□ 이와 같은 부모 등 보호자의 의무, 권리, 책임의 이행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5년 기준으로 교육부는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 계획」(2025.5.)에서 교육주체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한 최선의 학생 교육 실현을 목표로, 개인·부모·학교협력자로서의 학부모에 대한 다각적 지원, 가정-학교 협력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고, 「2025년 학부모 지원 사업 추진 계획」(2025.1.)을 수립하여 학부모와 함께 신뢰·존중·협력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목표로, 학부모 교육 활성화, 참여·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 실현, 학부모 지원 기반 강화 등 3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 정책 추진, 지원 사업 추진, 교육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부모 등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지원관 내 학부모정책과 주관 하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내 지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¹⁾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부모 등 보호자 관련

1) 2025년 기준 학부모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특별교부금 33억 5,000만원이며,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79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상세내역은 【참고자료 1】 학부모 지원 사업 관련 현황 참조)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²⁾ 각 시·도의 학부모회 설치·운영, 학부모 교육 지원 또는 활성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학교자치 활성화 등의 조례³⁾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상의 법령과 조례는 부모 등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호자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교육, 상담, 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책임교육정책실) ① 책임교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66.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⑧ 학부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3.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5.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6. 학부모단체와의 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8.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각 시·도의 학부모 관련 조례 목록은 【참고자료 2】 학부모지원 관련 조례 현황 참조

- 먼저 개정안은 제18조의6제1항에서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자’로 규정함.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보호자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개정안 이외에도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보호자’의 정의가 규정될 경우 다른 조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라는 용어의 의미가 개정안의 ‘보호자’ 정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참고로 개정안은 보호자에 대한 정의 내용으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는 차이가 있고, ‘학부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시·도조례에서는 ‘아동, 자녀, 학교의 학생

4) 관련 조항은 【참고자료 3】 「초·중등교육법」 상 ‘보호자’, ‘학부모’ 사용 조문 참조

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호자, 학부모 정의 관련 조항]

법률명	조항 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도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학부모 ”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 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학부모 ”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 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학부모 ”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 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다음으로 개정안은 제18조의6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교육 및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보호자에 대해 교육, 상담, 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고, 시책의 수립·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보호자의 의무, 권리, 책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보호자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보호자 지원 시책이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토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계획 수립·시행 등의 체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제18조의6제5항에서 보호자 지원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센터의 수행 업무를 규정함.

현행법은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학부모지원센터는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의 학부모지원센터 수행 업무 중 ‘제18조의6제5항제3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제공’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내용이 모호하므로, 자녀교육, 학교참여 등 관련 상담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김준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392호),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664호),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61

호)에서도 부모 등 보호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각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① 부모 등 보호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성국의원안은 보호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중 제1절 학생 제18조의6에서 제1항을 개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김준혁의원안은 같은 절에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을 신설함. 한편 신정훈·박성훈의원안은 모두 제4장 학교 중 제1절 통칙에 제28조의3을 신설하고 있으나 신정훈의원안은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중 제1절 학생에서 제18조의5(현행 제18조의6)⁵⁾에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

② 보호자 정의는 정성국의원안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각 개정안은 모두 보호자가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정훈·박성훈의원안은 교육에 필요한 시책으로 한정하면서,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⑤ 정성국·김준혁·신정훈의원안은 시책 수립·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체로 정성국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김준혁·신정훈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신정훈의원안은 보호자의 의무

5) 신정훈의원안(제2202664호)은 2024. 8. 8. 발의된 것으로, 개정 조문 중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는 2025년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6.3.1.부터 제18조의5에서 제18조의6으로 이동됨(법률 제20862호, 2025. 4. 1. 개정, 2026.3.1. 시행)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⑥ 김준혁·신정훈·박성훈의원안은 시책 수립·실시, 이행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⑦ 정성국·김준혁의원안은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운영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으로 동일하나 정성국의원안은 학부모센터로 규정하는 반면, 김준혁의원안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차이가 있음.

⑧ 김준혁·신정훈·박성훈의원안은 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⑨ 정성국의원안은 신학기 시작 등을 고려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준혁·신정훈·박성훈의원안은 하위 규정 개정 등을 고려하여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함.

⑩ 아울러 김준혁의원안은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이와 같이 각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문위치, 시책의 내용, 실태조사의 주체와 내

용, 학부모지원센터의 내용, 시행일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일한 기준 마련을 위해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부모 등 보호자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구분	정성국의원안 (제2213464호)	김준혁의원안 (제2213392호)	신정훈의원안 (제2202664호)	박성훈의원안 (제2201561호)
① 조문위치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제1항 개정, 제4항·제5항 신설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신설 － 제18조의8(학부모 지원센터) 신설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¹⁾ 제4항 신설 ·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신설	·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신설
② 보호자 정의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제1항 ·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 교육하고 있는 자	-	-	-
③ 시책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제4항전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학생의 교육 및 원 활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 보호자에 대한 교육, 상담, 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함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 교 교육 활동에 협력 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 할 수 있도록 ·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학생의 부모 등 보호 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 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학생교육 역량 강화 목적 교육 －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교육 － 기타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 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자녀교육 역량 강화 목적 교육 －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교육 － 기타
④ 교육	-	-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⑤ 실태조사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제4항후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시책 수립·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가능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제2항 · 교육부장관은 · 시책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가능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제4항 · 교육부장관은 · 시책의 수립·시행, 교육 실시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 가능	-

구분	정성국의원안 (제2213464호)	김준혁의원안 (제2213392호)	신정훈의원안 (제2202664호)	박성훈의원안 (제2201561호)
	•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 위임	•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은 대통령령 위임	•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 위임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제4항 • <u>교육부장관은</u> • <u>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u> 위해 실태조사 실시 가능 •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 위임	
⑥ 행·재정 지원	-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제4항 •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 <u>시책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u>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제3항 •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 <u>보호자 교육에 필요한</u> 행·재정적 지원 가능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제3항 •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u> • <u>보호자 교육에 필요한</u> 행·재정적 지원 가능
⑦ 학부모 지원센터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제5항 • 시책 추진을 위해 • <u>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운영</u> 가능 • 학부모센터 수행 업무 -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 - 보호자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협력 역량 강화 지원 - 보호자에 대한 상담 제공 - 기타 대통령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 시책의 수립·시행 지원을 위해 • <u>교육부장관은 전국 학부모지원센터</u>를, <u>교육감은 지역학부모 지원센터</u>를 <u>설치·운영 하거나 지정하여 위탁</u> 가능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수행 업무 -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보호자 관련 교육 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 기타 대통령령 규정사항 •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수행 업무는 대통령령 위임 •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	-

구분	정성국의원안 (제2213464호)	김준혁의원안 (제2213392호)	신정훈의원안 (제2202664호)	박성훈의원안 (제2201561호)
⑧ 위임	-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제3항 • 교육감은 제1항의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가능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제5항 • 시책 마련, 교육 실시, 행·재정적 지원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 위임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제4항 • 시책 마련, 교육 실시 및 지원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 위임
⑨ 시행일	•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⑩ 기타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 2213385호) 의결 전제	-	-

주: 신정훈의원안(제2202664호)은 2024. 8. 8. 발의된 것으로, 개정 조문 중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는 2025년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6.3.1.부터 제18조의5에서 제18조의6으로 이동됨(법률 제20862호, 2025. 4. 1. 개정, 2026.3.1. 시행)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안 제18조의6제1항) 보호자의 개념 규정은 아래의 사유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호자’의 개념은 동일한 법령 등에 통일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각 조항의 개념 범위가 다를 경우 법 해석·적용에 혼란이 우려됨.
 - * 「법령입안심사기준」(‘24. 법제처)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의 다수 조항에서 ‘보호자’ 또는 ‘학부모’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문별 내용·목적에 따라 그 의미·범위가 친권자, 조부모 등으로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어, 동 법에 ‘보호자’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보호자, 학부모의 권리를 규정한 동법 제18조(보호자 의견진술권),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등은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제13조(취학의무) 및 제68조(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결부된 의무 규정은 그 개념을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함.
 - 또한, 보호자 개념을 법률로 확정할 경우, 가정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학부모 정책 대상의 탄력적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 일부수정

- 학부모 관련 업무를 학부모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역사회 기관 등 타기관과의 협력 및 분담하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보호자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 이는 가장 가까운 신학기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법안 심사 경과,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시책 수립·실시 등에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 1

학부모 지원 사업 관련 현황

□ 2025년 학부모 지원 사업 관련 예산 현황

- 특별교부금 33억 5,000만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주관
공교육 경쟁력 제고 - 학부모 교육	3,350	
• 학부모 교육 활성화	785	시·도, 위탁
- 온라인 학부모 교육 강화	6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지역 기반 학부모 교육 전문강사 양성	170	시·도교육청
• 참여·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 실현	972	위탁
-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510	한국교육방송공사
- 학부모 소통 콘텐츠 개발	252	한국교육방송공사
- 학부모 정책 환류체계 구축	21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부모 지원 기반 강화	1,593	시·도, 위탁
- 학부모 지원 네트워크 강화	23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지역학부모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964	시·도교육청
-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	68	시·도교육청
- 학부모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3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 교육부

□ 2025년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센터 유형 ¹⁾	학부모지원센터 유형						비고 (교육 지원청 수)
		소계	시·도 ²⁾			시군구		
			본청 별도 공간 센터	본청 내 센터	본청 외 위·수탁 기관센터	지역청 거점 센터	지역청 (단일) 센터	
소계	-	79	5	10	4	23	37	177
서울	B	1	-	1	-	-	-	11
부산	B	1	-	1	-	-	-	5
대구	A	1	1	-	-	-	-	5
인천	C	6	-	1	-	-	5	5
광주	E	1	-	-	1	-	-	2
대전	E	1	-	-	1	-	-	2
울산	A	1	1	-	-	-	-	2
세종	A	1	1	-	-	-	-	0
경기	B	1	-	1	-	-	-	25
강원 ³⁾	C	19	-	1	-	-	18	17
충북	D	4	-	1	1	2	-	10
충남	C	16	-	1	1	-	14	14
전북	A	1	1	-	-	-	-	14
전남	D	10	-	1	-	9	-	22
경북	B	1	-	1	-	-	-	23
경남	D	13	1	-	-	12	-	18
제주	B	1	-	1	-	-	-	2

주 1) 센터유형: (A) 본청 학부모부서 관할 별도공간의 센터 운영, (B) 본청 학부모부서 내에 센터 운영, (C)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모두 센터 설치·운영, (D)본청 센터와 지역(청) 거점센터 설치·운영, (E) 본청에는 센터가 없고, 위·수탁기관에서 운영

2) 시·도센터는 위·수탁소속기관(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대전평생학습관)과 본청 내 센터 외의 소속기관의 센터(충북중원교육문화원, 충남교육과정평가원) 포함

3) 강원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내 속초학부모지원센터와 양양학부모지원센터가 별도 운영

자료: 교육부

참고 2

학부모지원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자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참고 3

「초·중등교육법」상 ‘보호자’, ‘학부모’ 사용 조문

구분	조문 내용
보 호 자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 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 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 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5(보호자 의 의무 등) ① 보호자 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 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¹⁾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 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보호자 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 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의6(보호자 의 의무 등) ¹⁾ * 현행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와 동일 ① 보호자 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 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¹⁾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 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0조의4(개별학생 교육지원) ¹⁾ ③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 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 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구분	조문 내용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 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 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학 부 모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 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 가 부담하는 경비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주: 1) 밑줄 표기된 조항은 2025. 4. 1. 개정되어 2026. 3. 1.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에 포함된 내용임

참고 4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 근거 개정안 원문

현행	① 정성국의원안(제2213464호)	② 김준혁의원안(제2213392호)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 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 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 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_____ _____.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 생의 교육 및 원활한 학교생 활을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교육, 상담, 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 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범위 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시 ·도교육감은 학부모지원센터 (이하 “학부모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부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 2.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협력 역량 강화 지원 3. 보호자에 대한 상담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 본법」 제30조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 교육 활 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 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 립·시행해야 한다.

현행	① 정성국의원안(제2213464호)	② 김준혁의원안(제2213392호)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법은 <u>2026년 3월 1일부터</u>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비고		김준혁의원이 대표발의 「교육기본법」(의안번호13385호) 의결 전제

현행	③ 신정훈의원안(제2202664호)	④ 박성훈의원안(제2201561호)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생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3(보호자에 대한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 마련,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